

드론산업 관련 업무 수탁기관 지정 변경

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드론산업 관련 업무 수탁기관 지정 현황(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-1181호, 2021. 10. 22)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

<변경 전>

위탁 업무의 내용	위탁받은 기관
법 제6조에 따른 드론산업 실태조사	항공안전기술원
법 제9조에 따른 드론시스템의 연구·개발에 대한 지원 (기체등록·사고정보·보험이력 등 드론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는 제외)	항공안전기술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
법 제9조에 따른 드론시스템의 연구·개발에 대한 지원 (기체등록·사고정보·보험이력 등 드론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에 한함)	한국교통안전공단
법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의 접수·확인·관리	항공안전기술원
법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관리	항공안전기술원
법 제12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	항공안전기술원
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및 관리	항공안전기술원

<변경 후>

위탁 업무의 내용	위탁받은 기관
법 제6조에 따른 드론산업 실태조사	항공안전기술원
법 제9조에 따른 드론시스템의 연구·개발에 대한 지원 (기체등록·사고정보·보험이력 등 드론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는 제외)	항공안전기술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
법 제9조에 따른 드론시스템의 연구·개발에 대한 지원 (기체등록·사고정보·	한국교통안전공단

보험이력 등 드론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에 한함)	
법 제9조의2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	한국교통안전공단
법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의 접수·확인·관리	항공안전기술원
법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관리	항공안전기술원
법 제12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	항공안전기술원
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및 관리	항공안전기술원

2. 위탁 업무의 처리방법(변경 없음)

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,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.

3. 위탁기간(변경 없음)

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

부 칙

이 고시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